

-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예방을 위한 -

입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



무신고(무표시) 수입식품(햄, 소시지 등 가공식품, 농·축·수산물 포함)판매 불가

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, 현품 포장지에 '한글표시사항(스티커 등)'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대부분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제품(개인휴대 반입품 및 보따리상을 통한 반입 등)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*납품업자를 통해 지방식약청의 '수입신고확인증'을 받아 두거나,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무신고 여부 확인

▶ 무신고 제품 판매 시 처벌 규정 (「식품위생법」 제4조 위반, 벌칙94조 적용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33조 위반, 벌칙45조 적용)

→ 고발(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 조치 및 해당제품 압류·폐기

- 「식품위생법」 제4조(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) 제6항 위반 : 누구든지 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
-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33조(판매 등의 금지) 제1항 5호 위반 :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

한글표시사항 무 표시(무신고) 제품 예시



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·판매 불가

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판매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·판매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(폐기 등)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, 판매 시 처벌 규정 (「식품위생법」 제3조 위반)

→ 과태료(1차 30만원 / 2차 60만원 / 3차 90만원) 부과 및 해당제품 압류·폐기

- 위반차수 적용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증가